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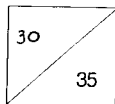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12	8	1996. 4. 18	총재 이경식

의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및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및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외관계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
법규조항

제외취지 예금지급준비율을 인하여 은행의 수지기반을 확충하고 제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제외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예금지급준비금의 율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불 입)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 (안)	비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제4장 제2절에 의거 금융기관의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 2.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 만기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8.0% 3. 기타예금에 대하여는 11.5% ② (생략)	제2조(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 2.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 만기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6.0% 3. 기타예금에 대하여는 9.0% ② (현행과 같음)	- 지급준비율 인하(8.0%→6.0%) - 지급준비율 인하(11.5%→9.0%)
제3조~제5조 (생략)	제3조~제5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1. 이 규정은 1996. 4. 23(4월 하반기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한다. 2. 1994. 5. 1 이전에 계약된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하여는 2년이상 만기 정기적금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적용한다.	- 시행일자 명시 - 이미 폐지된 가계우대정기적금 에 대하여 동일 만기 정기적금 에 맞추어 지급준비율 인하 (8.0%→6.0%)